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 검 토 보 고

〈결격(해임)사유 중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제외〉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058호, 제2207059호, 제2207060호,
제2207061호, 제2207062호, 제2207063호, 제2207064호,
제2207066호, 제2207068호, 제2207069호, 제2207071호,
제2207072호, 제2207076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결격(해임)사유 중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제외	12
1. 입법 필요성 및 주요내용	12
2. 개별 법률 검토	17

I. 제안경위

김현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이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연번	법 안 명	의안번호	발의일	회부일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058	2024.12.30.	2024.12.31.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59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60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61		
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062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63		
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064		
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066		
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68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69		
1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071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072		
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07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채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정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2호 삭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

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1호나목 삭제 등).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위원회를 구성하는 임명직 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호 삭제 등).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등).

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발기인(發起人)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호).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

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 임원 및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삭제 등).

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삭제).

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용카드사업자 소속 모집인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2항제2호 삭제 등).

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삭제).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

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부업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5호나목 삭제 등).

1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삭제 등).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채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2호 삭제 등).

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급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發起人) 및 이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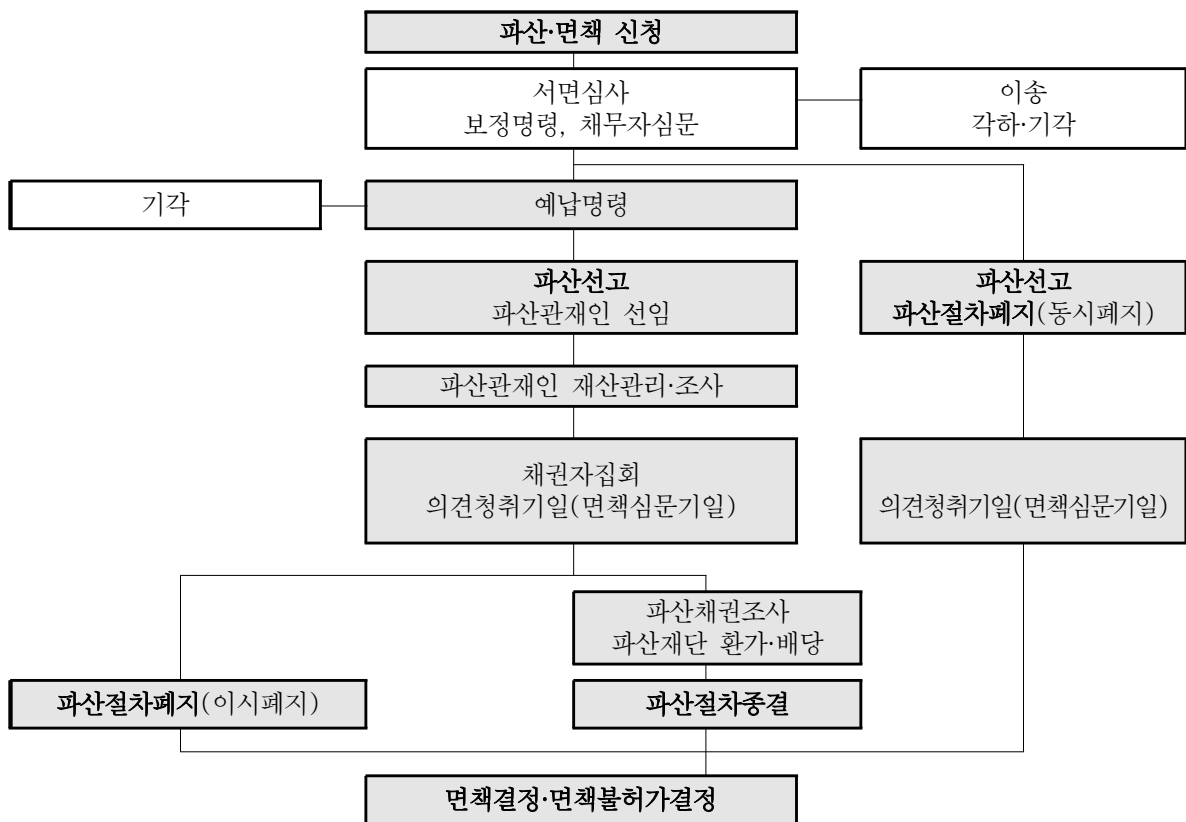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등).

Ⅲ. 검토의견: 결격(해임)사유 중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제외

1. 입법 필요성 및 주요내용

- 파산(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그 정리를 위해 법원에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를 말함. 파산선고 이후에는 법원의 관리 하에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미변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며, 채무자가 복권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파산절차가 완료됨.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자료: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그 채무자는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됨.¹⁾

또한, 파산재단을 통해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면책’이 필요함.²⁾ 법원은 면책을 신청³⁾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을 거친 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고 있음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①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③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에 당연히 복권⁵⁾되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이하 생략)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불응죄)·제656조(파산증퇴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면책 결정이 확정되지 못한 채무자는 변제 등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복권 결정을 하여야 함⁶⁾.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⁷⁾에 따르면 파산절차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 이는 개인이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파산절차를 활용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도에 신설된 조항임.⁸⁾

□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에서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를 각종 신분·자격 또는 인허가 등에서 배제(결격 사유, 등록취소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음.

□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신분·자격 또는 인허가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공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제538조(동의를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8)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 의안번호 1725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p.2.

무담임권, 영업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과잉규제가 될 수 있고,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여 성실한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의 취지와도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파산선고로 인한 경제적 궁핍상태가 개인의 직위·자격 및 인허가에 따른 행위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고, 공익적 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법상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 등에서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를 제외할지 여부는 수행하는 직무의 공익성, 거래상·재산상 신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개정 대상 법률과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정대상 법률 및 주요내용 >

연번	법률명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결격사유 등 제외대상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 결격사유 ◦ 위원직상실사유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	◦ 결격사유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임명직위원	◦ 결격사유 ◦ 해임사유
		금융감독원장	◦ 해임사유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임원	◦ 결격사유 ◦ 해임사유
5	신용협동조합법	조합 임원 및 발기인	◦ 결격사유 ◦ 해임사유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 결격사유
7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 임원	◦ 해임사유
8	여신전문금융업법	회원모집인 및 가맹점모집인	◦ 결격사유 ◦ 등록취소사유
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협회 임원	◦ 해임사유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	◦ 결격사유 ◦ 등록취소사유
11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 결격사유 ◦ 등록취소사유
12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 결격사유 ◦ 등록취소사유
1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발기인, 이사, 감사	◦ 결격사유

2. 개별 법률 검토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원직 상실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3. ~ 7. (생략)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7. (현행과 같음)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⁹⁾는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워크아웃)¹⁰⁾ 등을 위해 설치되는데, 구체적으로 금융채권자 간 이견 조정, 반대채권자의 채권 매수가액 및 조건 조정, 금융채권자협의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채권단(금융회사) 주도로 시행하는 회생작업을 뜻함.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단이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등 재무개선 조치를 하게 됨.

회 의결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함.¹¹⁾

□ 개정안은 파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기업개선(워크아웃)과 관련하여 금융채권자 간 이견 조정 등 공정하고 효과적인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높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 역시 신뢰성이 높지 않은 위원의 경우 채권자 간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결격사유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

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채권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협의회가 의결한 후에 조정을 신청한 이견은 제외한다)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2. 제27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조정
4. 제30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협조
5.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6.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개정
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1호
나목 삭제, 같은 항 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 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 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 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가. (생략) 나.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u> 다. ~ 사. (생략)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의 경우 가. <u>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 중</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나.·다. (생략)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 가. (현행과 같음) <u><삭 제></u> 다. ~ 사. (현행과 같음) 2. ----- ----- 가. <u>제1호가목 또는 라목</u> ----- ----- 나.·다.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파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① 현행법 제12조¹²⁾는 금융상품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자

본금 및 인력·전산 설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을 일정 기준 이상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임원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어, 이러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고, ②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가 금융상품 판매 및 자문업 등을 할 경우 본인의 재정적 부실¹³⁾을 만회하기 위해 불완전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 및 자문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높은 도덕성과 신뢰가 요구되므로, 해당 결격사유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4. 임원이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13)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6개월 간의 생활비 등 특정재산 외에 대부분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됨.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① 금융위원회 임명직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②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 7. (생략)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 (생략) ② (생략)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 ----- -----. 1. 제8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① ----- ----- ----- -----.

현행	개정안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 4. (생략)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수행이 금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금융위원회¹⁴⁾ 임명직 위원¹⁵⁾ 및 금융감독원장은 고도의 전문성,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가 요구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각종 금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제도,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고려할 때 고도의 청렴성 및 건전한 사회적 신용도가 요구되므로 파산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및 임원직 상실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 8. (생략)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8. (현행과 같음) ② ----- ---- <u>제1항제1호 또는 제3호</u> ----- ----- -----. ----- -----.

- 개정안은 파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금융회사의 임원은 거액의 금전을 운용하는 그 업무 특성상, 파산선고로 인한 지급 불능 등 궁박한 사정에 있는 경우 금융회사 임원

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임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건전한 사회적 신용도가 요구되므로, 현행 결격사유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발기인의 결격사유 및 면직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2. ~ 12. (생략) ② · ③ (생략)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 ----- ----- -----.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8조·제71조의2¹⁶⁾에 따라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는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고, 임원으로 임명된 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면직됨.

□ 개정안은 파산자가 차별적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은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며, 파산선고로 인해 지급 불능 등 궁박한 사정에 있는 경우 해당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고, 금융업은 거래상 신뢰와 재산상 신용이 중요하므로,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현행 결격사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는 임원의 자질·평판 등은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가 임원으로 재임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6)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⑦ 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생략) ②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 8. (생략)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8. (현행과 같음)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 ①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 9. (생략)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9. (현행과 같음)

□ 신용조사업은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업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의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함.¹⁷⁾

□ 개정안은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결격사유에서 파산 선고 후 미복권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함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신용조사회사의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¹⁸⁾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등 그 업무 특성상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되고,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신해 재산조사 및 채권 변제 촉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본인이 파산선고로 인해 궁박한 상황에 있으면 업무 특성상 불법

-
-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추심, 횡령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신용조사회사와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경제관이 요구되므로, 현행 결격사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 임원 해임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2. (생략) 3. <u>파산선고를 받은 경우</u> 4. (생략)	제18조(임원의 해임)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임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유통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타 직종 대비 공공성 및 사회적 신용도가 높게 요구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¹⁹⁾되는데, 동법 제34조제2항²⁰⁾은 임원의 당연퇴직사유로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시에 해당 조항이 함께 개정되지 못하면 개정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원모집인과 가맹점모집인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생략)
-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안 제18조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4. (생략)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14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 2. -----제14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 3. 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6. (생략)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4조의3·제14조의4²¹⁾ 및 제16조의3·제16조의4²²⁾에 따라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는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및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고, 이들이 등록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개정안은 파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려는 취지이나,

신용카드 회원모집인과 가맹점모집인은 소비자 및 가맹점에게 관련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약관 또는 가맹점약관을 정확히 안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일차적 책무를 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신용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회원모집인과 가맹점모집인은 소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 2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등록 당시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의 해임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0조(임원) ①·② (생략)	제20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③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삭제>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현행법 제11조·제15조²³⁾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화재보험 관련 보험요율의 할인등급 사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개정안은 파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려는 취지이나,

2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消火設備)에 따른 보험요율의 할인등급에 대한 사정(査定)
3.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4.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한국화재보험협회는 공익적 목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그 임원은 소화시설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타 직종 대비 공정성과 사회적 신용도가 더 크게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협회 임원은 금융 관련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반인보다 엄격한 거래상의 신뢰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4. (생략)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생략)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u> 다.·라. (생략) ② (생략)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생략) <u>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 7. (생략) ②·③ (생략)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략) 2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u>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u>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u>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u>,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	<u><삭 제></u> 다.·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 ----<u>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u>----- ----- 2의3. ----- ----<u>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u>----- -----

현행	개정안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 8. (생략)	----- 2의4. ~ 8.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파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① 현행법 제3조의5²⁴⁾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본금 및 인력·전산 설비, 사회적 신용 등을 일정 기준 이상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대표자·임원·업무총괄사용인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

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추는 것

가.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는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이하 생략)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는 것 (이하 생략)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생략)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분권이 없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고,

② 파산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정적 부실²⁵⁾을 만회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과잉 대부 등 관련 법 위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이용자 대부분은 금융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대부업자 등의 건전한 사회적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그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대부협회는 금전을 취급하는 업종 성격상 보다 강화된 사회적 신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 결격사유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거부)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삭제 등).

현행	개정안
第4條(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會計士가	제4조(결격사유) ----- -----

25)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6개월 간의 생활비 등 특정재산 외에 대부분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됨.

현행	개정안
될 수 없다. 1. ~ 4. (생략) 5. <u>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u> 6. (생략) 第8條(登録拒否) ① 금융위원회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録을 거부하여야 한다. 1. <u>第4條 各號의 1</u>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② (생략) 第9條(登録取消)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된 公認會計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公認會計士의 登録을 取消한다. 1. <u>第4條 各號의 1</u>에 해당하게 된 때 2.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거부) ① ----- ----- -----. 1. <u>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취소) ① ----- ----- -----. 1. <u>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u>----- 2. ~ 4. (현행과 같음)

☐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 세무대리 등의 업무²⁶⁾를 수행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의무²⁷⁾

26)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27)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①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로 위촉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위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²⁸⁾

□ 개정안은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①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공적 신뢰성을 증명해야 하는 등 공인회계사 업무가 높은 신뢰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② 공인회계사가 재정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있는 경우 위촉인의 사무를 충실히 처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점²⁹⁾ 등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를 결격사유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업무상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결격사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변제능력 상실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28) 「공인회계사법」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인회계사(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제외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三者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6개월 간의 생활비 등 특정재산 외에 대부분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됨.

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2호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10. (생략) ③ (생략)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4. (생략) ② ~ ④ (생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1.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2.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 3.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생략)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5. (생략) ③·④ (생략)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5. (생략) ③·④ (생략)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8. (생략) ② ~ ④ (생략)	② ----- -----. 1.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93조(신고사항)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제8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³⁰⁾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30)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모집 업무에 있어서 상품약관을 안내하는 등 준수사항³¹⁾ 이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차적 책무를 지고 있음.

□ 개정안은 파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려는 취지이나,

①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타 직종 대비 사회적 신용도가 더 크게 요구되고, ② 「상법」 제646조의2³²⁾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보험료 수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파산선고를 받은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보험회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31)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2) 「상법」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사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험설계사의 업무 특성상 소비자 피해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 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발기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 6. (생략)	제4조(발기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u>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u> 2.·3. (생략)	제12조(이사의 자격) ----- -----. 1. <u>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u> ----- 2.·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7조(감사의 자격)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 5. (생략)	제17조(감사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 2. ~ 5. (현행과 같음)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생략) 3. 임원은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 -----

□ 개정안 파산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하려는 취지이나,

재무상태 악화 기업의 금융기관 채권 정리를 위해 제정된³³⁾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2006년에 사실상 실효되었고,³⁴⁾ 동법상 인가·등록된 법인도 모두 소멸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3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칙 <법률 제6275호, 2000. 10. 23.>

제2조 (유효기간) ① 이 법은 공포 후 6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당해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존립기간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이 실효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113